

JST공유대학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모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2026년 5극3특 공유대학 공동연구분야—

공고문

- JST공유대학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의 기술수요와 지역사회 문제 및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문역량을 결합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수요기반 공동기획, 기관별 실질적 연구수행, 객관적 성능검증·현장실증 및 연구성과의 교육·산업·지역사회 환류를 지원하는 경쟁형 사업입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사업유형별 신청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2026. 10. 28.

JST공유대학본부장

신청·접수 일정

항목	내용
접수기간	공고일~11월10일(화)까지 ※접수 상황에 따라 추가 공고할 수 있음
제출방법	이메일(jst@jbnu.ac.kr) 및 공문 접수(JST공유대학본부장)
제출주체	연구책임자가 작성하고 주관 참여대학의 산학협력단장 확인을 거쳐 앵커사업단장이 제출
제출형식	서명·날인된 신청서 및 증빙 PDF, 수정 가능한 연구계획서 파일 제출
접수완료	접수확인 통보를 기준으로 완료 여부 확인
보완	경미한 서류 누락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 요청
문의	산학융합협력팀(063-219-5822)

1. 초광역 공동연구 공모 세부사항

1-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전북도내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문제에 대해 타 시·도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고급 분석·설계 역량을 결합하고, 전북 기업·실증현장에 적용함. (서울대·고려대·KAIST 등 필수 참여)
- 기관 간 상호보완적 공동과업과 공동산출물을 확보하여 단순 외부자문·장비이용 중심 협력에서 실질적 공동연구체계로 발전시킴.
- 공동연구 성과를 전북 교육·기업 활용 및 후속 공동 R&D 기획으로 환류함.

1-2. 신청요건 및 초광역 인정기준

- 도내 대학 1개교 이상, 타 시·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 전북 소재 기업 1개 이상을 구성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도내 주관 참여대학 소속 전임교원이며, 학생연구원 1인 이상 및 전북 참여기업 연구원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전북도외 기관은 담당 연구자·독립 과업·공동 과업·제공자원·성과책임을 명시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북 내 분원만 참여하는 경우 역외 본원 명칭만으로 초광역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타 시·도 수행조직의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함.
- 단순 자문·방문·시험분석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은 필수 초광역 공동연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1-3.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항목	작성사항
초광역 사업	도내 부족역량·역외 기관 선정 이유·대체 불가능 또는 상호보완적 기여
과업 분담	전북·역외 각 기관의 독립과업, 통합과업 및 결과 인계 방식
전북 실증	장소·기업·데이터·검증주체·접근승인·현장 적용조건
공동성과	공동 연구결과·기술·논문·IP·데이터 등 실질적 공동기여
교육환류	전북 학생 참여·공동지도·MD/MM/AIX-PBL 교육모듈
후속기획	기술적 보완 수요·후속 공모분야·역할·제안 일정

2. 지능형 전략산업별 실증형 공동연구 공모 세부 사항

2-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기업 애로기술·제품·공정개선 및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도내 대학 간 전문역량을 결합하여 공동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함.
- 기업 기술문제 발굴·현장진단·공동기획·연구개발·성능검증·실증·교육환류·성과활용을 연계함.
- 기초·보호학문과 지역문제해결 연구는 학술적 기여와 정책·사회적 활용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산업형 성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일반대학은 핵심기술·분석·설계·대학원 연구를, 전문대학은 장비운용·제작·실증·직무교육 등 강점에 따라 참여하도록 구성함. 전문대학 참여는 선택임.

2-2. 연구팀 구성 및 신청 자격

- 연구책임자는 공고에서 정한 주관 참여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협약기간 내 총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과제별 연구담당자·세부과업·산출물·공동기여·예산을 명시하고 기관의 **참여확약**을 제출함.
- 학생연구원은 1인 이상 참여하고 개인별 연구과업·지도교원·기간·보상계획을 작성함.
- 주관·공동연구 신청 책임자의 두 사업 중복 신청을 제한함.

2-3. 주요 지원 분야

분야	공모 연구주제(예시)	주요 검증 관점(예시)
로봇·모빌리티(지정)	피지컬AI·비전검사·로봇제어·미래차 부품	정확도·공정시간·안전·운영 안정성
그린에너지(지정)	재생에너지 예측·ESS·수소 운영·안전관리	예측성능·효율·운전조건·안전
농생명·바이오(지정)	스마트농업·바이오소재·제조공정·기능성 연구	재현성·품질·공정 적합성·검증 단계
첨단반도체(지정)	소재·부품·장비·신뢰성·공정 개선	물성·성능·신뢰성·현장 적용성
의생명 융합	질환 예방·진단·치료 기초·융합연구·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 기술 개발·지역의료·건강관리 적용	과학적 타당성·재현성·안전성·유효성·의료·건강 현장 적용 가능성
기초·보호학문(자유)	지역어·구술문화·생활사·지역 학문기반	자료 출처·학술적 기여·공개 및 교육활용
지역문제해결(자유)	인구·생활인구·돌봄·지역교육 서비스 전달	수요기관 참여·방법 타당성·효과 분석·적용 가능성

3. 공통 신청·평가 기준

3-1. 주요 제출서류

번호	서류	작성·확인 주체	구분
1	지원신청서 및 신청요건 확인표	연구책임자·주관기관	필수(신청 시 제출)
2	연구계획서(요약): 4개년 방향 및 당해연도 상세계획	연구책임자·참여기관	필수(신청 시 제출)
3	기업 기술수요 확인서 또는 승인된 수요기관 약약서	기업·수요기관	필수(신청 시 제출)
4	NTIS 검색결과 및 선행과제 차별성·비중복성 검토서	연구책임자	필수(신청 시 제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연구진 전원	필수(신청 시 제출)
6	기관별 참여확약서·역할분담·예산표	참여기관 권한 있는 확인자	필수(선정 후 제출)
7	학생 연구참여·교육환류 시설장비 공동활용 계획서	연구책임자·지도교원	필수(선정 후 제출)
8	기존 IP·데이터 이용권 및 공동성과 관리계획서	참여기관	필수(선정 후 제출)
9	실증 검증계획서 및 현장·데이터 확보 증빙	연구진·현장기관	초광역·지능형 中 산업형 필수(선정 후 제출)
10	학술·지역활용 계획서	연구진·활용기관	지능형 中 기초·지역문제형 필수(선정 후 제출)
11	개인정보·연구윤리·안전·보안 관련 확인서	해당 참여자·기관	공식 서식 확정 후 적용(선정 후 제출)
12	인허가·윤리심의·시험승인 자료 또는 확보 일정표	해당 연구진	해당 시 필수(선정 후 제출)
13	기업·기관 참여 확인서	기업·수요기관	해당 시 필수

3-2. 지원 제외 및 보완 판단

- 필수 구성요건 미충족, 목적 부적합, 기관별 실질적 과업 부재, 허위자료, 실질적으로 중복된 연구내용·비용, 적용기준상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행가능성·실증준비도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추정만으로 부적격 판단하지 않음. 보완 가능성·기한을 구분하여 적격 및 부적격을 안내함.
- 동일 비용은 복수 재원으로 중복 집행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하지 않음.

3-3. NTIS 차별성 검토

- 연구목표·내용·방법·대상·실증환경·기대성과에 대해 유사과제를 검색하고 검색결과와 차별성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필요시)

3-4.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사전 요건검토 → 전문평가(서면·필요 시 발표) → 종합심의 및 지원액 조정 → 결과통보·절차상 이의 검토 → 선정조건 보완 → 협약·착수
- 사전 요건검토와 연구내용 평가를 분리함. 평가위원은 연구·산업·실증·사업화 및 연구유형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 신청기관·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비밀유지 기준을 적용함.
- 적격 과제 부족 시 미선정 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과업·예산·성과목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선정조건은 연구진의 수행가능성을 재확인하고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3-5. 초광역 공동연구 선정 평가표(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필요성·실현가능성	수요의 구체성·전북 전략산업 정합성·선행연구 차별성·기간 내 수행가능성. 초광역은 도외 협력 필요성 추가	10
목표·내용	목표·기준 상태·연차별 로드맵·연구방법·핵심 과업·실증 설계·교육연계 구체성	20
전략·체계	기관별 독립/공동과업·자원확보·연구결과 통합·위험대응·초광역 상호보완성	20
수행역량	기술·전공·연구경험·인력·장비·기업 및 검증기관 역량·학생지도 체계	20
활용·효과	기업 적용·기술사업화·후속 R&D·교육환류·전북 기여	10
성과관리	성과 정의·검증·증빙·일정·기관별 책임·중복관리·예산 타당성	10
우대 항목 충족	•임용 후 5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성 •외국인 교수의 연구 참여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참여	10
합계		100

3-6. 지능형 전략산업별 실증형 공동연구 및 기초·지역문제형 선정 평가표(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필요성·실현가능성	학문적·지역적 필요성·대상 현안·연구기간 및 접근가능성	10
목표·내용	연구질문·방법·자료 수집·분석의 타당성·연차계획·교육연계	20
전략·체계	대학 간 학문적 상호보완성·수요기관 협력·자료/현장 확보·연구윤리	20
수행역량	해당 분야 전문성·현장경험·자료관리·학생지도	20
활용·효과	학술적 기여·자료 공개·교육·정책·사회 활용 및 지역확산	10
성과관리	산출물 기준·검증·수요기관 확인·증빙·예산 적정성	10
우대 항목 충족	•임용 후 5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구성 •외국인 교수의 연구 참여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참여	10
합계		100

4. 협약성과 설계 및 인정기준 등

4-1. 공통 필수성과 설계안

- 논문·특허·기술이전 수량은 연구유형·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안하고 평가·협약으로 확정함.

성과항목	당해연도 기준 (안)	증빙
공동연구 결과	과제당 통합 결과보고서 및 기관별 과업결과	보고서·연구기록·기관별 결과
산업 실증	초광역·산업 실증형 과제 검증 결과	시험/분석·운영자료·현장기록
학술·지역활용	기초·지역문제형 과제당 유형별 핵심 결과물	논문/자료집/아카이브/정책·서비스 모델 등
학생 연구참여	학생연구원 1인 이상 및 개인별 실질 과업	참여기록·산출물·지도기록
교육환류	과제당 교육모듈 또는 사례자료	학습목표·자료·담당교원·적용계획
공동활용	과제 특성에 맞는 자원공유 계획 이행	승인·이용대장·참여자·활용결과
성과활용	기업·지역·TLO 등과 활용계획	활용협의·성과소개·후속계획
초광역 추가	공동수행 실적과 후속 공동기획서	공동산출물·후속과업·제안 일정

4-2. 실증계획 및 성공 판정

- 최종 보고 전 기준 상태·목표 상태·검증환경·지표·방법·판정기준·검증주체를 안내하여야 함.
- 검증환경은 실험실·모사환경·파일럿·실제 현장으로 구분하고 도달단계를 기록하여야 함.
- 외부 시험·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확보 가능성·일정·예산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부족·현장 접근 지연·안전·인허가 문제에 대한 대체계획을 협의로 제시하여야 함.

4-3. 연구 결과물 인정 요건 및 사사 표기

○ 연구결과물 인정요건

- 연구결과물(논문)은 연구개시일 1개월 이후 투고해야 함
- 게재 확정 논문의 인정 범위 : ① 게재 일자가 명시된 논문, ② 논문지 홈페이지에 '제출기한 이전 일자'로 게시된 논문, ③ 논문 출간 승인일이 '결과물 제출기한 이전'으로 명시된 증빙서류가 첨부된 논문

※ 제출기한 내 게재 확정: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또는 accept letter까지 인정

○ 연구결과물의 사사표기

- 논문 및 특허 실적에는 사사표기와 과제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추후 안내)
- 특허 실적에는 사사표기 및 과제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추후 안내)

4-4. 교육환류 및 자원공유

- 연구수요·데이터·시제품·검증사례를 MD·MM·AIX-PBL·캡스톤·현장실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 교육모듈은 대상·학습목표·내용·담당교원·운영시기·평가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시설·장비는 신규구입 전 기존 대학·지역기관 자원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이용과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여야 함.

5. 사업비 관리 원칙 협약 항목

5-1. 사업비 관리 원칙

- 혁신법 및 한국연구재단 집행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함.
- 기관별 예산은 과업·산출물·실증범위와 대응하여 작성함.

○ 학생인건비·장학금·프로그램 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적용항목을 구분함. 기관별 기존 인건비와 중복되는지 검토함.

※ 학·석·박사 과정생 5명 이상 필수 참여(박사후연구원 인건비 계상 불가함)

○ 간접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공동 기술개발과제 간접비·연구수당 등은 적용지침을 확인하여 편성하며 총괄 사업과 중복 편성하지 않음.

○ 시설장비 도입·자산관리·공동활용 및 시스템 등록은 적용기준에 따름.

○ 책임자·기관·과업·예산·목표의 주요 변경은 승인된 변경절차에 따름.

5-2. 공동성과에 대한 협약 항목

항목	협약 전 합의사항
기존 기술	기존 IP·노하우·데이터 및 제공범위
신규성과	실질적 발명·연구 기여에 따른 권리관계
출원·관리	출원기관·비용분담·유지·공개시기
이전·활용	이전 협의·기업 사용조건·수익배분·후속개발
데이터	접근권·보관·이용·공개·교육활용·종료 후 처리
분쟁·변경	협의·조정·기관 변경·중도종료 처리

6. 사업 접수, 선정 협약 일정(안)

단계별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제 공고/계획서 접수 `26.10.28.~11.10.	과제평가·선정 결과 발표 (평가)`26.11.13. (선정)`26.11.17.	협약 체결 및 과제 착수 `26.11.20.
JST공유대학본부	평가위원회	각 연구팀

7.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재단 예산 집행 기준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계상기준
1.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인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장비비	주요사업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재료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수당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부담비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5조제4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2.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